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최훈중 의원)

의안 번호	2856
----------	------

발의연월일 : 2024년 3월 8일

발의자 : 최훈중, 금광연, 박선미,  
정혜영, 임희도, 오승철,  
오지연 의원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하남시의회의 제2차 정례회 집회 시기를 현행(12월 1일)에서 11월 20일로 앞당기고,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사 시기 일치를 통한 하남시 시정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2차 정례회 집회 일자 변경(안 제4조제2호)
- 나.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변경(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개정조례안 : 덧붙임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다.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 마.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24. 3. 11. ~ 3. 17.
  - 의견내용 : 입법예고 중

하남시의회조례 제 호

##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12월 1일”을 “11월 20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를 “법 제1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42조”를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정례회 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p> <p>1. (생략)</p> <p>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u>12월 1일</u>에 집회한다.</p> <p>제5조(정례회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u>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u></p> <p>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u>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u></p>	<p>제4조(정례회 집회)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11월 20일</u>-----.</p> <p>제5조(정례회 심의) ① ----- ----- <u>법 제150조</u>----- ----- ----- ----- -----.</p> <p>② ----- <u>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u>----- -----.</p>